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004년 6월부터 대형점포, 노래방, 찜질방, 지하주차장 등 다중(多衆)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1백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3일 전부터 두 달 동안 공개토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1백 가구 이상 아파트가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 그 수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또한 기준치가 현재 정해져 있나요?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는 벌금만 내고 공개안해도 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의 경우에는 3개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의 측정장소 외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mu\text{g}/\text{m}^3$  이하, 벤젠  $30\mu\text{g}/\text{m}^3$  이하, 톨루엔  $1,000\mu\text{g}/\text{m}^3$  이하, 에틸벤젠  $360\mu\text{g}/\text{m}^3$  이하, 자일렌  $700\mu\text{g}/\text{m}^3$ , 스티렌  $300\mu\text{g}/\text{m}^3$

이며,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폐쇄)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경유 및 B-C유 탱크가 있어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가 되어있는데 오염 및 누출 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이번에 탱크를 폐기하고 폐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개월 전에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오염 및 누출검사 면제 대상이라서 안해도 되는지요?

A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수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수시)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세차장에서 폐기물(슬러지) 배출시 신고는?

세차장에서 폐기물(슬러지)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5톤 미만은 신고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없이 배출을 할 수 있는지요?

**A** 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미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의무는 없으나, 발생량이 소량이라 할 지라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 Q 순수저장탱크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계통수로 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순수는 상수도를 순수처리 설비를 거쳐 별도의 순수저장탱크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순수저장탱크를 폐수배출시설 중 정수시설로 보아, 순수저장탱크 드레인수 혹은 OverFlow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배출시설로 보지 않아 우수로 배출해도 무관한지요?
2. 만약 순수저장탱크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된다는 근거로 순수저장탱크만 방지시설 면제신청이 가능한지요?

**A** 순수저장탱크는 폐수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우나, 동 탱크에서 배출되는 물을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시 희석처리에 해당되어 위법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순수저장탱크에서 우수로 배출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 Q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

회사 전기로 집진기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아연성분이 60%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집진기에서는 철성분이 40% 정도 포함된 분진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지정인가요. 아니면 일반폐기물 인가요?

**A**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연 및 철 성분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집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연 성분이 함유된 분진과 여과집진시설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이 함유된 분진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